

출자회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285호

출자회사관리규정

확 정 일 : 2023년 3월 24일

시 행 일 : 2023년 3월 27일

출자회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既 제정된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운영지침 근거 마련
 - 출자회사 투명·책임경영을 위한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심의·의결 안건 구체화
 - 정부 출연·출자 사전협의* 시기에 따른 정기 운영심의회 개최시기 확정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2. 주요 골자

가. 출자회사에 대한 주관부서 관리의무 명확화(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외부 기관 등의 요구에 따른 공사 감사부서에 출자회사 감사요구 조항 신설(안 제18조)

다.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운영지침 근거 조항 신설(안 제21조제5항)

라.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심의·의결 안건 및 개최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등 제출(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취업심사위원회 심사 강화를 위한 최소 인원 제한 및 문구수정 (안 제25조)

출자회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고사항)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당해년도 2월까지 출자회사운영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6월 3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출자회사 운영심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출자회사 운영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출자회사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업무·회계감사 등) ① 감사부서는 필요한 경우 또는 국회, 감사원, 출자회사 감사,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요구가 있는 경우 출자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 등을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출자회사 감사 등에 감사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를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⑤ 주관부서장은 기업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이행계획서의 실효성,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관부서장, 유관부서장”을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출자·출연”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는 제6조에 따른 정부 사전협의 시기를 기준으로 전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제6조에 따른 정부 사전협의, 제13조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제16조에 따른 경영 실적평가, 제18조에 따른 업무·회계감사 등, 제20조에 따른 기업진단 평가결과 및 그 밖에 출자회사 운영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기타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장이 별도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조치계획)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심의일 또는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5인 이하”를 “5인 이상”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명”을 각각 “위촉”으로 한다.

부 칙<2023. 3. 24.>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0조(협 의사항) <u>출자회사</u>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u>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u> 1.~5. (생 략)	제10조(협 의사항) <u>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u>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u>사전협의하게 하여야 한다.</u> 1.~5. (현행과 같음)	- 출자회사에 대한 주관부서 관리의무 명확화
제11조(보고 사항) <u>출자회사</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주관부서에 <u>보고하여야 한다.</u> 1.~2. (생 략) <u><신 설></u> 3.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회계감사 등 감사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4.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5. 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6.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7. 그 밖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1조(보고 사항) <u>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u>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주관부서에 <u>보고하게 하여야 한다.</u> 1.~2. (현행과 같음) 3. <u>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u> 4.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회계감사 등 감사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5.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6. 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7.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8. 그 밖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 출자회사에 대한 주관부서 관리의무 명확화
제13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u><신 설></u>	제13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u>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당해</u>	-출자회사 예산편성 등 투명성과 사업

현행	개정안	사유
② 출자회사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하며, 필요할 경우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과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도록 한다.	<u>년도 2월까지 출자회사운영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출자회사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하며, 필요할 경우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과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도록 한다.	계획의 자율성 강화 -항 번호 변경
제16 조(경영실적평가) ①~③ (생략) 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6월 30일까지 종료하고 <u>그 결과에 따라 출자회사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결정한다.</u> <신설>	제16 조(경영실적평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6월 30일까지 종료하고, <u>그 결과를 출자회사 운영심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하여야 한다.</u> ⑤ <u>출자회사 운영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출자회사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결정할 수 있다.</u>	-출자회사 경영실적평가의 객관화
제4장 감사 제18조(검사 등) ① <u>공사는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u>	제4장 감사 제18조(업무·회계감사 등) ① <u>감사부서는 필요한 경우 또는 국회, 감사원, 출자회사 감</u>	-감사 관련 근거조항 등 감사제도 운영

현행	개정안	사유
또는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u>사,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요구가 있는 경우 출자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 등을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u>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u>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출자회사 감사 등에 감사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다.</u>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
제20조(기업진단) ① (생략)	제20조(기업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및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시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사업심의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심의 전 출자 수익성, 공사 재무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심의부서는 <u>출자회사 운영 심의회</u> 심의 전 출자 수익성, 공사 재무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주관부서장은 기업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u>	-현행 제22조제1항 이동

현행	개정안	사유
<신설>	<u>마련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⑥ <u>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이행 계획서의 실효성,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u>	-현행 제22조제2항 이동
제21조(출자회사 운영심의회) ①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괄부서장, 사업심의 부서장, <u>주관 부서장</u>, <u>유관 부서장</u>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는 기업진단 평가결과 제출시기인 매년 1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출자회사 운영심의회) ①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괄부서장, 사업심의 부서장, <u>주관 부서장</u>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u>출자회사 운영심의회는 제6조에 따른 정부 사전협의 시기를 기준으로 전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u> ③ <u>출자회사 운영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제6조에 따른 정부 사전협의, 제13조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제1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제18조에 따른 업무·회계감사 등, 제20조에 따른 기업진단 평가결과 및 그 밖에 출자회사 운영심의회가</u>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개최시기 변경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심의사항

현행	개정안	사유
③ 출자·출연이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 경영투자심의 또는 「총사업비 관리등을 위한 사업협의 운영지침」상의 사업협의 대상일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이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 경영투자심의 또는 「총사업비 관리등을 위한 사업협의 운영지침」상의 사업협의 대상일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타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항 번호 변경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운영지침 근거 조항 신설
제22조(조치계획) ① 주관부서장은 기업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이행계획서의 실효성,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제22조(조치계획) ① <u>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심의일 또는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삭제>	-제1항 및 제2항은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
제25조(취업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제25조(취업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5인 이상</u>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강화를 위한 심사위원 최소 인원 제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내부위원은 별도 절차없이 인사발령으로 선임된 것으로 하되 내부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별도 위원을 <u>지명</u>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u>지명</u>한다. ③ (생 략)	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내부위원은 별도 절차없이 인사발령으로 선임된 것으로 하되 내부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별도 위원을 <u>위촉</u>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u>위촉</u>한다. ③ (생 략)	-문구 수정
[별표1] (제4조 관련) 출자 사전타당성 검토 기준 (생 략)	[별표1] (<u>제5조 관련</u>) 출자 사전타당성 검토 기준 (현행과 같음)	-관련 조항 오기재정정

출자회사관리규정

제정 2009. 10.1. 규정 제11호

개정 2020. 1.28. 규정 제216호

개정 2021. 8. 5. 규정 제248호

전부개정 2022. 8.24. 규정 제272호

개정 2023. 3.24. 규정 제2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자 및 출자한 회사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출자 및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다른 규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공사가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가 최대주주가 아닌 출자회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제3조(출자 및 출자회사 관리의 기본방향) 공사는 적정 출자 및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 감독한다.

제4조(출자·출연)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
2. 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2.4)」의 주택 건설·매입·공급·임대 및 관리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제5조(사전타당성 검토) 공사는 출자시 공공성, 재무성, 효율성 등 출자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별표1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제6조(정부 사전협의)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출자·출연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를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관리업무

제7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업진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부서) ① 공사는 출자회사 관리를 위하여 출자회사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소관 출자회사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및 재무타당성 검증을 전담하는 사업 심의부서(이하 “심의부서”라 한다)를 둔다.

② 제7조에 따른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4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자회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규 출자 시 결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및 심의부서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주주총회 등 안건처리) 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여 공사의 의사가 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1.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사업용 자산은 제외한다.
3. 임원의 보수 및 임용(승진과 채용)
4. 정부 정책과 관련한 주요 계획(변경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중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사항)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1. 분기별 업무계획 및 실적
2.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
3.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4.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회계감사 등 감사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5.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6. 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7.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8. 그 밖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3장 경영목표,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

제12조(경영목표의 검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2월까지 출자회사 운영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4>

③ 출자회사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로 하며, 필요할 경우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과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3. 3. 24>

제14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의 다음 연도 경영평가 편람을 제12조와 제13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이를 12월 31일까지 출자회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보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 조(경영실적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출자회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적 분야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6월 3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출자회사 운영심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⑤ 출자회사 운영심의회에서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출자회사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제17조(사장경영계약) 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 사장 임명시 출자회사로 하여금 경영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출자회사 사장과 공사사장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서에는 출자회사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제18조(업무, 회계감사 등) ① 감사부서는 필요한 경우 또는 국회, 감사원, 출자회사 감사,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요구가 있는 경우 출자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 등을 감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출자회사 감사 등에 감사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4]

제5장 기업진단

제19조(대상) ①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회사 전부를 기업진단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성 필요에 의해 존속하지만 업무적 독립성이 없고, 인적·자원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
3. 정리, 청산 진행중인 출자회사
4.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
5. 제16조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A등급 이상)하여 기업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는 매년 기업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기업진단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업진단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기업진단) ① 공사는 별표2에 따라 사업성 또는 비사업성 출자회사로 구분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되,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 수행 여부 등 사업성격에 따라 진단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2023. 3. 24>

③ 사업심의부서는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심의 전 출자 수익성, 공사 재무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④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장은 기업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4>

⑥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이행계획서의 실효성,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신설 2023. 3. 24>

제21조(출자회사 운영심의회) ①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괄부서장, 사업심의 부서장, 주관 부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②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는 제6조에 따른 정부 사전협의 시기를 기준으로 전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③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제6조에 따른 정부 사전협의, 제13조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제16조에 따른 경영 실적평가, 제18조에 따른 업무·회계감사 등, 제20조에 따른 기업진단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출자회사 운영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이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 경영투자심의 또는 「총사업비 관리등을 위한 사업협의 운영지침」상의

사업협의 대상일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자회사 운영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⑤ 기타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24>

제22조(조치계획) ① 주관부서장은 출자회사 운영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심의일 또는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② 삭 제 <2023. 03. 24.>

제6장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등 취업제한

제23조(퇴직임직원의 취업제한) ① 퇴직임직원(“퇴직예정자”를 포함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출자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으나, 제25조 취업심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 퇴직임직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출자회사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회사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③ 퇴직임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에 따르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① 취업승인대상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별지3호 서식의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취업 적정성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의 취업심사위원회 안건양식을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인사관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취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취업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1. 위원장 : 총괄부서장으로 하되 임원 재취업의 경우 총괄부서 담당 본부장

2. 위원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내부위원 : 총괄부서장, 출자회사 주관부서장으로 하되 임원 재취업의 경우 총괄부서 담당 본부장, 주관부서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나. 외부위원 :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간사 : 총괄부서 담당부장으로 하되 임원 재취업의 경우 총괄부서장

② 내부위원은 별도 절차없이 인사발령으로 선임된 것으로 하되 내부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별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별표3 취업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퇴직임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출자회사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업무밀접성이 인정 될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출자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자회사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부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출자기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직원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취업자 정보공개) 총괄부서장은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출자회사와 협의하여 공사의 교육과정에 출자회사 직원을 연수하게 하거나, 공사의 각 부서에 실무습득을 위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연구보고서, 정보와 통계자료, 경영개선사례 및 전산 소프트웨어 등 출자회사의 경영능률 향상과 기술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공사의 지적소유물을 출자회사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22. 8. 24.>

이 규정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4.>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5조](#) [관련](#)) 출자 사전타당성 검토 기준 <개정 2023. 3. 24>

출자 사전타당성 검토 기준

구 분	내 용
공공성	
① 합법성	출자 사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목적적합성	출자 사업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③ 정책적합성	출자 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재무성	
① 수익성	공공기관의 출자로 인한 예상 수입과 지출 감안 시 수익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② 재무안정성	출자 대상 법인의 중장기 손익 등으로 인한 해당 공공기관의 추가적 부담 등 재무적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효율성	
① 내부화가능성	공공기관이 별도의 출자없이 자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여부
② 기능중복성	출자 사업이 타 공공기관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여부
③ 민간경합성	민간이 해당 사업이나 기능을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여부

[별표2] (제20조 관련) 기업진단 항목 및 방법

기업진단 항목 및 방법

□ 사업성 출자회사

진단항목	세부내용	진단방법
1. 출자회사 성과의 적정성	• OO회사의 출자목적과 관련된 주요사업 성과가 계획대비 적정한가?	1.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출자목적과 관련 있는 지표들만 검토 2. 선별된 지표들의 당해 목표치의 적정성을 출자목적 달성 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 3.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4. 적정한 지표의 적절한 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 성과목표 달성을 인정. 출자회사가 제시한 지표가 부적절하거나, 목표치가 과소할 경우, 달성 불인정
	• (건설 중 출자회사) OO회사의 사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	1.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성과 불인정
2. 출자회사 재무건전성	• OO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이 건전한가?	1. 3년 이상 연속 적자 또는 당해에 자본잠식상태인 경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
	• (건설 중 출자회사) OO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계획된 적자나 자본잠식 이상으로 훼손되었는가?	1. 계획보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을 경우 취약한 것으로 간주
3. 환류의 적정성		
3-1. 주요사업 성과관리	• OO회사는 사업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우리 회사의 출자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새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른 예상 성과가 출자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1. 출자회사가 사업계획 시에 현 사업의 핵심 문제점과 주요 원인을 파악하였는지 점검 2. 사업계획에 실행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3. 준비한 사업계획의 성과가 보수적으로 예측되었는지 점검 4. 예측된 사업성과가 출자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점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계획의 적절성 인정

진단항목	세부내용	진단방법
3-2 재무전망	• 새로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회사의 향후 재무전망은 긍정적인가?	1. 전망근거가 객관적이거나, 최근의 재무동향과 비교하여 보수적인 전망치인지 점검 2. 3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5년 내 자본이 원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경우 재무적 회복 가능성 인정, 다만 기관별 사업 특성 감안 가능(합리적 근거 제시)
4. 모회사와의 교류 적정성		
4-1. 인력교류 제도, 방식의 적정성	• ○○회사가 우리 회사 출신 인력을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가? •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인력에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였는가?	1. 모회사 인력이 체계적인 심의제도 등을 통해 파견, 이직 등을 하고 있는지 점검 2. 파견되거나 이직한 인력이 파견이나 이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3. 모든 인원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필요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만 인력교류 적정성 인정
4-2 모회사와의 거래 적정성	• ○○회사는 우리 회사와 출자나 설립목적에 적절한 수준에서 거래하고 있는가? • ○○회사는 우리 회사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가?	1. 출자나 설립목적 이상으로 출자회사가 매출에서 모회사에 의존하는지 점검 2. 출자나 출자목적에 부합하는 영업거래 외에 출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부적절한 지원이 있는지 점검 3. 출자나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준에서 영업 상 거래가 발생하고, 부적절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 적정성 인정

□ 비사업성 출자회사

진단항목	세부내용	진단방법
1. 투자계획의 적정성	○○ 출자회사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투자 목표가 명확한지, 지분 처분 조건 및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상시 모니터링, 정기 평가 등 투자 관리 체계가 수립되었는지 점검
2. 목표 달성 여부	○○ 출자회사에 대한 투자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투자계획 상의 투자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점검
3. 미래 전망	○○ 출자회사의 미래 가치 전망은 긍정적인가?	·차기 정기 평가 시까지 투자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별표3] (제26조 관련) 퇴직임직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퇴직임직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1. 취업제한사유 해당여부 (①,② 모두에 해당할 경우 재취업 제한 대상, O, X로 표시)

항 목	홍○○
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음	
② 퇴직전 5년간 공사 소속부서 업무와 취업회사의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붙임)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준

2. 취업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1번의 ①, ②번 모두 “O” 해당하는 경우 작성)

*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 가능, 해당항목에 O 표시

항 목	홍○○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정원 초과 등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	
③ 출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포함)로 해당산업분야 발전에 기여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	
⑦ 부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우리공사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후 우리공사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종합 심사의견(최종 취업심사 통과 유무, 사유 명기)

2000. 00. 00 심사위원

(서명)

[붙임 : 퇴직 전 업무와 취업회사의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②항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퇴직 후 3년 내의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관리카드 양식

OO회사 관리카드 양식

① 출자회사 현황

1. 사업추진 목적 및 경위

-

2. 회사개요

회사유형		출자일(설립일)	
자 본 금		출자액(지분율)	
조 직		인 원(정원)	
설립근거		대표자	
주요사업			
특이사항			

3. 출자 및 지분현황

계 (%)	LH	비고

4. 재무현황

구 분 (백만원)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자 산					
부 채 (부채비율)					
자 본					

5. 자율진단 및 조치계획

기재부 자율진단 여부	20X4년 조치결과	20X5년 조치결과	비고

5. 임원 및 인적교류 현황(퇴직 및 현직 모두 포함)

구분	직위	성명	임기	주요이력

6. 출자회사 내 직원 현황(5번의 임원 및 인적교류현황 이외)

구분	인원수	비고
정규직		출자회사 직원 00명, LH직원 00명
비정규직		

② 출자회사 사업추진 현황

1. 사업추진 현황

-

2. 사업종료 및 청산계획

-

3. 추가 청산 계획

-

③ LH 혁신방안에 따른 청산 이행계획

1. 청산 계획

-

2. 청산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

- 구체적으로 기술

④ 기타 현안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22조 관련) 이행계획서 표준 양식

이행계획서 표준 양식

☐ 출자회사 개요

- 설립목적/ 설립일시/
- 지분구성
- 경영평가 결과
- 기업진단 유형(사업성/비사업성 여부)

☐ 기업진단 결과

- 사업성 출자회사

출자목적 달성,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적절성, 재무전망 건전성	인적교류 및 거래 적정성	조치방향			
			지배력 有		지배력 無	
			지분처분가능	지분처분불가	지분처분가능	지분처분불가
출자목적 미달성 or 재무건전성 부적정(x)	사업계획 부적절 or 부정적 재무전망(x)	-	즉각적인 출구전략 마련	점진적인 출구전략마련 (최소한의 경영개선, 타주주 협상 후 매각 등)	즉각적인 출구전략 마련	점진적인 출구전략마련 (투자손실 최소화노력, 타주주협상 후 매각 등)
출자목적 달성 & 재무건전성 적정(○)	사업계획 부적절 or 부정적 재무전망(x)	-	출자 유지 여부 분석 후 - 유지: 경영개선계획마련 - 폐지: 출구전략마련(정상화 불가 유형으로 처리)		출자 유지 여부 분석 후 - 유지: 출자유지 - 폐지: 출구전략마련(정상화 불가 유형으로 처리)	
출자목적 달성 실패 or 재무건전성 부적정 (x)	사업계획 적절 & 긍정적 재무전망(○)	-	출자회사 사업계획 실행		출자유지	
출자목적 달성 & 재무건전성 적정 (○)	사업계획 적절 & 긍정적 재무전망(○)	인적교류 및 거래 부적정(x)	부적절한 교류 방식, 규모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출자유지	
출자목적 달성 & 재무건전성 적정 (○)	사업계획 적절 & 긍정적 재무전망(○)	인적교류 및 거래 적정(○)	출자유지		출자유지	

○ 비사업성 출자회사

투자계획 적정성	투자목표 달성	투자전망	조치방향
계획 부적정 (x)	-	-	모기업 적정 투자계획 수립
계획 적정 (○)	투자목표 달성 (○)	-	지분 처분 검토
계획 적정 (○)	투자목표 달성 실패 (x)	긍정적 (○)	차기 평가시까지 보유
계획 적정 (○)	투자목표 달성 실패 (x)	부정적 (x)	출구전략수립 (투자손실 최소화 계획)

☐ 세부 조치계획

○

☐ 향후 일정

○

첨부 : 기업진단 세부결과(진단항목별)

[별지 제3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취업승인 신청서

취업승인 신청서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업무밀접성 판단사유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사유				
취업승인 신청사유 (업무밀접성○)	근거 * 「출자회사관리규정」 제26조제5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사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취업심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직제규정(근무기관) 2. 조직도(근무기관) 3. 취업예정확인서(취업예정 출자회사) 4. 정관(취업예정 출자회사) 5. 일반현황(취업예정 출자회사) - 연혁, 조직·구성, 정원, 예산 등 6. 취업경위서(업무밀접성 인정시) 7. 취업사유(전문성 등) 입증자료(업무밀접성 인정시) 8. 취업예정확인서(취업예정 출자회사)(업무밀접성 인정시)
------	---

[별지 제4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취업심사위원회 안건양식

회 의 차 수

제 차

출자회사 취업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제 안 부 서	○ ○ ○ ○ 처(실)
제 안 년 월 일	20 . .

(본문)

제 00 차 취업심사위원회 심의안건

☐ 취업예정자

- 성명, 생년월일
- 퇴직일자, 퇴직당시 소속, 직위

☐ 취업경위

- 취업예정기관 일반현황(정관 포함)
- 채용사유, 예정직위, 예상업무
- 채용시기, 채용방법, 예상연봉 등

☐ 업무내역서

- 연도별/부서/부
- 담당업무
- 취업사유(전문성 등) 입증자료

☐ 주관부서 의견

- 취업승인(불승인) 요청사유

[별지 제5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취업심사 검토의견서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각각 작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 「출자회사관리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등)

4. 종합 의견

[별지 제6호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회의개최 통지서

2000년도 제 00 차 취업심사위원회 개최안내

다음과 같이 취업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안전번호	제 목	제안부서

4. 내 용 : 별도 붙임

5. 담당자 : ○○○○처 ○○○○부장 성 명(전화번호)

년 월 일

간사 (인)

[별지 제7호서식](제24조제3항 관련) 취업심사 결과통보서

2000년도 제00차 취업심사위원회 결과통보서

수 신 :

제 차 취업심사위원회(. .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취업심사위원회 의결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다 음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의결내용

홍길동(550505-00000000) 에 대한 0000회사 취업을
(승인, 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간사 (인)